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74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김선민 · 서왕진 · 신장식
차규근 · 정춘생 · 이해민
김준형 · 박은정 · 황운하
최혁진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 · 당뇨병 · 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 · 가공 · 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 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 · 필수 · 공공의료를 강

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 · 제23조의4 · 제23조의5 · 제23조의6 신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를 말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당음료부담금

제23조의 제목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담금을”을 각각 “담배부담금을”로, “부담금에”를 “담배부담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담금”을 “담배부담금”으로 한다.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가당음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가당음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가당음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5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터 당 225원
2.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8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 당 300원

②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가당음료의 용량과 산출된 가당음료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가당음료제조업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가당음료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5(가당음료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당음료제조업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가당음료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당음료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6(가당음료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연구사업

13.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

제28조제1항 중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을 “제9조의4,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당음료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第2條(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를 말한다.</u>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부담금</u> <u><신 설></u> 2. (생 략) 제23조(<u>국민건강증진부담금</u>의 부과 · 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u>담배부담금</u> 2. <u>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당음료부담금</u>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3조(<u>담배부담금</u>의 부과 · 징수 등) ① ----- ----- ----- ----- ----- ----- -----

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 9.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담배부담금”-----
-----.

1. ~ 9. (현행과 같음)

② -----

-----담배부담금-----
-----.

③ -----

-----담배부담금-----

-----.

④ (현행과 같음)

⑤ -----담배부담금-----

-----담배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생략)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담배부담금-----

-----.

⑥ -----

-----담배부담금-----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담배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담배부담금-----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담배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담배부담금-----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가당음료부담금의 부

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
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라 한
다)가 판매하는 가당음료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
금(이하 “가당음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5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터 당 225원

2.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8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
당 300원

②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가당음료
의 용량과 산출된 가당음료부
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가당음료제조업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가당음료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

<신 설>

<신 설>

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5(가당음료부담금의 납
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가당음료제조업자등에
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가당음료의 반
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당음료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23조의6(가당음료부담금 부과
· 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

	<u>장관은 가담음료부담금의 부과 ·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u>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12. (생략) ② · ③ (생략)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 · 연구사업</u> 13. <u>지역 · 필수 · 공공의료사업</u>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28條(보고 · 檢査)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	第28條(보고 · 檢査) ① ----- ----- -----

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u>제9조의4</u>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 ----- <u>제9조</u> <u>의4, 제23조제1항 또는 제23조</u> <u>의4제1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	---